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Korea | Tax | 4 August 2025

Korean Tax Newsletter

2025 년 7 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5 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무동향

- 국세청, 12 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예규판례

○ 법원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안전부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부동산의 지특법상 '사권 제한 토지' 해당 여부 등

○ 국세청

- 1 년에 2 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 및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인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2025 년 세제개편안 발표

새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기본방향의 토대 위에,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본 개편안은 입법예고(8 월 1 일 ~ 8 월 14 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 월 3 일(수)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 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PDF) 바로가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강국 도약 지원

■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 7 의 2, 조특칙 별표 6 의 2)

〈개정안〉

- 세부기술 대상 확대(인공지능 분야 추가, 7 개 신설, 2 개 확대)

분야		세부기술
신설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확대	미래형 운송이동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인공지능 분야 추가, 3 개 신설)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시설투자 활성화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 의 8, 조특령 §22 의 12, 조특칙 §13 의 11 신설)

〈개정안〉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중소: 15%)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의 6)

〈개정안〉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조정) 기본공제율 10%(중소: 15%), 추가공제율 10%(중소: 15%)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 7, 조특칙 별표 6)

〈개정안〉 방위산업에 대한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 (세부기술)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 (사업화시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개정이유〉 방위산업의 R&D·시설투자 활성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 의 8, 조특령 §26 의 8)

〈개정안〉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시근로자(실제 근로기간 1 년 이상) 증가분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x 1 인당 공제액

구분		1 인당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3 년)		중견 (3 년)	대 (2 년)
		수도권	지방		
우대(*)	1 년차	700	1,000	500	300
	2 년차	1,600	1,900	900	500
	3 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 년차	400	700	300	-
	2 년차	900	1,200	500	-
	3 년차	1,000	1,300	500	-

(*) 청년(15~34 세), 장애인, 60 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추징규정 삭제,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 의 8, 조특령 §26 의 8)

〈개정안〉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 (중견) 5 명, (대기업) 10 명
-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 의 8)

〈개정안〉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월별 근로시간 60 시간 이상 근로자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산방식 간소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 의 8)

〈개정안〉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해당 과세연도에 19~34 세 ⇒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 세)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 의 21)

〈개정안〉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

-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 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조특법 §104 의 24④, 조특령 §104 의 21⑧)

〈개정안〉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8 의 3, 조특령 §35 의 5)

〈개정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용)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외국법인(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 년 거치 3 년 분할 익금산입
  ① 출자법인: 5 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②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80% 이상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②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③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 의 27 신설)

〈개정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법정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주주(거주자)
- (제외)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① 대상: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② 적용세율: 3 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 천만원 이하	2 천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3 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0 의 32, 조특령 §100 의 32, 조특칙 §45 의 10)

〈개정안〉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① 투자포함형: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② 투자제외형: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에 배당[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결산배당 및 중간·분기배당)] 추가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 **지역성장 지원**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 의 2, 조특령 §60·§60 의 2)

〈개정안〉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구분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 년 100% + 3 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 년 100% + 3 년 50%	5 년 100% + 3 년 50%
지방광역시	7 년 100% + 4 년 50%	5 년 100% + 3 년 50%
중규모도시	10 년 100% + 5 년 50%	5 년 100% + 3 년 50%
그 외	10 년 100% + 5 년 50%	7 년 100% + 4 년 50%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 +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1,500 만원(청년·서비스업 2,000 만원)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 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1 명당 1,500 만원(청년·서비스업 2,000 만원)]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 의 10, 조특령 §97 의 10 신설)

〈개정안〉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회사)
-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 년 이내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비율
  ②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이연받은 세액 전액
  ③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 의 2)

〈**개정안**〉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자녀 1 명당 기본공제 한도 50 만원(최대 100 만원) 상향
  [단, 총급여 7 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 만원(최대 50 만원) 상향]

구분		총급여 7 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 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기본	300	250
	자녀 1 명	350	275
	자녀 2 명 이상	400	300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개정안**〉 비과세 한도 '연 600 만원 ⇒ 연 3 천만원'으로 확대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28 의 5, 조특령 §25 의 5 신설)

〈**개정안**〉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의 3)

〈**개정안**〉 적용기한 '25.12.31. ⇒ '28.12.31. 연장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 의 2①)

〈**개정안**〉 적용배제 범위 확대(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추가)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 의 4·§47 의 5)

〈**개정안**〉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매 1 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매 1 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개정안〉 법인세율 상향 조정

- (일반법인)

과세표준	세율
2 억원 이하	10%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
200 억원 초과 3,000 억원 이하	22%
3,000 억원 초과	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 억원 이하	20%
200 억원 초과 3,000 억원 이하	22%
3,000 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개정안〉 세율조정

- (기본세율) 0.35% 유지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05%(농특세 0.15%)
  ② (코스닥·K-OTC) 0.20%(농특세 없음)
  ③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개정안〉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조정

- (보유금액) 종목당 50 억원 이상 ⇒ 종목당 10 억원 이상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개정안〉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 조원 이하	0.5%
1 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개정안〉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추가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 의 3)

〈개정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과세체계 합리화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 의 9~§118 의 18)

〈개정안〉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및 계산·배분(국조법 §73 의 2 신설)

〈개정안〉

- (내국추가세의 적용)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① 또는 ② 중 택 1))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②)

〈개정안〉 제출서류로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추가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①)

〈개정안〉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법인법 §125)

〈개정안〉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현황명세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 (과태료) 미제출·거짓제출시 최대 1,000 만원 부과(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개정안〉 배당가산율 조정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11%)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개정안〉 범위 명확화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 의 9·§76 의 12)
〈개정안〉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 (공제받은 법인〈단서 신설〉)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 (결손 법인〈단서 신설〉)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법인법 §76 의 13③·§76 의 14②·§113⑤)
〈개정안〉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등 규정 ⇒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등 규정으로 보완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개정안〉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상품 등을 조건부·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개정안〉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합리화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개정안〉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 의 5)
〈개정안〉 증여자 적용범위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을 포함
〈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 국제조세

○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67①)
〈개정안〉
- (범위 확대)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 (대상 확대)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②·§57 의 2①·②·③)
〈개정안〉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A X B / C
  A: 산출세액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C: 과세표준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 §156 의 6, 소득령 §207 의 8⑧, 법인법 §98 의 6, 법인령 §138 의 7⑧)

〈개정안〉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 월 말(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개정안〉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개정안〉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국세 제반 분야**

○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개정안〉
- (수정신고 요건 명확화)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 (기한후신고 요건 명확화)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세무동향

국세청, 12 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은 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9 월 1 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 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8.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신고개요
- 12 월 결산법인은 9 월 1 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 제도변경
-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함.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
- 그 외 법인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여 자금부담 경감 가능(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 1 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세정지원
-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800 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 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 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7.1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 년까지 유예 가능

○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됨
- 재해발생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규판례

[법원]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6.12. 선고 2025 두 31960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와 기능 / 지방세기본법 제 88 조 제 3 항 제 3 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사안

피고가 지방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 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 88 조 제 3 항 제 3 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임

판결요지

지방세기본법 제 88 조 제 1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제 4 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 만 원 이상인 경우'(제 5 호) 등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 제 2 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 3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제 2 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제 3 호),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 4 호)를 들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 1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 두 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 두 49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 88 조 제 3 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제 3 호)를 들고 있음.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 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 88 조 제 3 항 제 3 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법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7.3. 선고 2025 두 30271, 상고기각)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 313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 1 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의 의미

■ 사안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에 기초하여 그 지분 가액을 평가한 다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증여일 2 년 전부터 증여일 6 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유사아파트(이하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였음. 이에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 괄호 부분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위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1 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음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은 "제 1 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에 대한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 68 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 1 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 60 조 제 2 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 1 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4 부 2809, 2025.7.3., 기각)

■ 쟁점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 9673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4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사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분할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020.6.2. 설립된 법인으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부산광역시 OOO 외 3 필지(이하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토지 9 필지를 승계취득하였고, 2021.11.30.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이하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분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8.5.이므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부칙 제 4 조(2009.5.21. 법률 제 9673 호로 신설된 후 2010.12.30. 법률 제 10423 호로 최종 개정된 것, 이하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기간(이하 "특례기간") 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3.1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2020.6.2.)로 보아 쟁점토지가 쟁점부칙조항의 특례기간 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1.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1.8.5.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가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특례기간 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 47 조 제 1 항은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8.5.11. 선고 2014 두 4434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 92 조의 2 제 6 항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손익 귀속 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 68 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68 조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을 분할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 88 조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역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0 서 2572, 2021.6.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부동산의 지특법상 '사권 제한 토지' 해당 여부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2025.5.29.)

■ 질의

①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원 예정지(쟁점 부동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부동산 전체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9.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00 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000호)하면서 그 결정취지를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2011.2.17. 고시한 '00 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서울특별시고시 제2011-00호)'(쟁점 고시)에서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쟁점 부동산을 도시기반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신설)하였는 바, 쟁점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쟁점 고시에 첨부된 해당 지형도면은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은 2001년에 조례 감면으로 신설되었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현재의 감면 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시행된 시세 감면조례에서 '그 해당 부분'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중 일부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될 경우 부동산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편입된 일부 부동산(안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감면대상 토지를 '그 해당 부분'으로 명확화한 것임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의 경우 당초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주택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편입된 일부 면적에 대해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후 토지나 지상건축물 역시 일부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편입되어 고시된 경우 그 해당 부분만 감면되도록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규정을 명확화한 것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 두 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청] 1 년에 2 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서면-2024-법규법인-2502, 2025.5.15.)

■ **질의**

1 년에 2 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변동으로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2017.00.00. 설립된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A 법인, B 법인(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 18 조의 2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238, 2025.5.20.)

■ **질의**

무디스 모형의 적용이 세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조법 시행령 제 12 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를 절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보증요율은 무디스 모형을 따르는 국세청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왔는데, 국외자회사의 신용도가 B2 에서 B1 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개선 전보다 산출 범위가 상승하게 됨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 제 6 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제 5 항 제 2 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 및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인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4198, 2025.6.25.)

■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의 일부지분을 보유한 경우 조특법§13 의 3⑥(공동인수에 의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반도체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미국에 있는 소·부·장 외국법인(“피인수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함
- 질의법인과 A 법인은 피인수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미국에 인수목적법인(“B 법인”)을 설립하고 B 법인을 통해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완료 하였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 조의 3 제 9 항 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3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서면-2023-법규재산-3420, 2025.6.30.)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에게 부여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복지포인트의 증여시점이 포인트 부여시점인지 실제 사용시점인지 및 사용시점인 경우 과세 최저한 규정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A 회사는 현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
- 기금은 출연받은 자금으로 매년 3 월 1 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며, 매달 직원의 복지포인트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여 카드사에 불입
- 직원은 1 년간 해당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소멸됨(이월불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24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청]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4-법규부가-3234, 2025.6.30.)

■ 질의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이자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미국본사로부터 AA 게임, 일부 액티비전 및 제 3 자 게임(이하 "AA 게임")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국내사용자들과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AA 게임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함
- A 게임은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PC 용 게임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바일용 게임(이하 "모바일게임")은 외국법인인 bb 와 cc 가 각각 운영하는 bb 스토어 및 cc 스토어(이하 "앱 오픈마켓")에서 결제 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의 모바일게임 공급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사용자들이 지급한 모바일게임 앱 구입대금은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미국본사에게 지급하고, 미국본사는 수취한 대금에서 질의법인과의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질의법인에 지급함
- 질의법인은 국내사용자들과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상 질의법인을 모바일게임 공급주체로 판단하여, 앱 오픈마켓에서 모바일게임앱이 다운로드된 기간의 모바일게임 매출(이하 "쟁점매출")을 부가법§48·§49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함
- 외국법인인 앱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라이선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미국본사이므로, 국내 최종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AA 모바일게임의 글로벌 공급주체를 미국본사로 판단하고, 질의법인의 쟁점매출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부가법§53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 국외사업자(미국본사)가 제 3 자(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 3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제 3 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함

회신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53 조의 2 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 53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청]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0701, 2025.6.26.)

■ 질의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5.X 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 년 A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1 억원)를 취득하여 A 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A 법인은 '25.6 월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A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할 유상감자 대가는 2 억원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1 억원(2 억원 - 1 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8 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김경조 Partner	정호석 회계사
+82 (2) 6676-2416	+82 (2) 6099-4279	+82 (2) 6099-4734
jekwon@deloitte.com	kyungjokim@deloitte.com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